

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

판 결

사 건 2018고단1615 횡령
피 고 인 A
검 사 정영주(기소), 강제하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김상호(국선)
판 결 선 고 2019. 1. 11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2009. 3. 30. 피해자 B와 함께 화성시 C에서 플라스틱 사출제조업체인 'D'를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, 피해자는 생산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여 이익금을 공동 분배하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.

1. 자동차 대금 횡령

피고인은 2013. 4. 29.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행할 목적으로 E 코란도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,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(D) 명의의 F은행 계좌(G)



에서 2,578,86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자동차 매도인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.

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. 9. 20.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 걸쳐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27,859,0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.

2. 피고인 개인경비 사용으로 인한 횡령

피고인은 2013. 11. 19. 외국으로 골프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(D) 명의의 F은행 계좌(H)에서 여행업체인 I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768,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.

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. 7. 19.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개인 축의금, 개인 재산세 납부 등 개인 경비 사용목적으로 7,559,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

1.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
1. 고소장

1. D 계좌내역서

1. 계좌내역서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355조 제1항(포괄하여, 징역형 선택)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(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, 판시 제1항의 경우



: 2019-02-01

동업자인 피해자 역시 자신의 처가 사용하던 차량 관련 대금을 D의 계좌에서 지급 받았고, 폐업일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회사에 반환한 점,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범행기간 및 횡령금의 규모, 인출 경위 등 참작)

판사 김종범 _____



범죄일람표 1.(코란도할부금)

순번	일자	인출된 계좌번호	금액(원)	내용	비고
1	2013-04-29		₩ 2,578,860	코란도 계약금	
2	2013-05-20		₩ 438,562	코란도 할부금	
3	2013-06-20	"	₩ 481,998	"	
4	2013-07-22	"	₩ 481,998	"	
5	2013-08-20	"	₩ 481,998	"	
6	2013-09-23	"	₩ 481,998	"	
7	2013-10-21	"	₩ 481,998	"	
8	2013-11-20	"	₩ 481,998	"	
9	2013-12-20	"	₩ 481,998	"	
10	2014-01-20	"	₩ 481,998	"	
11	2014-02-20	"	₩ 481,998	"	
12	2014-03-20	"	₩ 481,998	"	
13	2014-04-20	"	₩ 481,998	"	
14	2014-05-20	"	₩ 481,998	"	
15	2014-06-20	"	₩ 481,998	"	
26	2014-07-21	"	₩ 481,998	"	
17	2014-08-20	"	₩ 481,998	"	
18	2014-09-22	"	₩ 481,998	"	
19	2014-10-20	"	₩ 481,998	"	
20	2014-11-20	"	₩ 481,998	"	
21	2014-12-31	"	₩ 259,740	"	
22	2015-01-20	"	₩ 481,998	"	
23	2015-02-23	"	₩ 481,998	"	
24	2015-03-20	"	₩ 481,998	"	
25	2015-04-20	"	₩ 481,998	"	
26	2015-05-20	"	₩ 481,998	"	
27	2015-06-22	"	₩ 481,998	"	
28	2015-07-20	"	₩ 481,998	"	
29	2015-08-20	"	₩ 481,998	"	
30	2015-09-21	"	₩ 481,998	"	
31	2015-10-20	"	₩ 481,998	"	
32	2015-11-20	"	₩ 481,998	"	
33	2015-12-21	"	₩ 481,998	"	
34	2016-01-20	"	₩ 481,998	"	
35	2016-02-22	"	₩ 481,998	"	



: 2019-02-01

36	2016-03-21	"	₩	481,998	"	
37	2016-04-20	"	₩	481,998	"	
38	2016-05-20	"	₩	481,998	"	
39	2016-06-20	"	₩	481,998	"	
40	2016-07-20	"	₩	481,998	"	
41	2016-08-22	"	₩	481,998	"	
42	2016-09-20	"	₩	481,998	"	
43	2016-10-20	"	₩	481,998	"	
44	2016-11-21	"	₩	481,998	"	
45	2016-12-20	"	₩	481,998	"	
46	2017-01-20	"	₩	481,998	"	
47	2017-02-20	"	₩	481,998	"	
48	2017-03-20	"	₩	481,998	"	
49	2017-04-20	"	₩	481,998	"	
50	2017-05-22	"	₩	481,998	"	
51	2017-06-20	"	₩	481,998	"	
52	2017-07-20	"	₩	481,998	"	
53	2017-08-21	"	₩	481,998	"	
54	2017-09-20	"	₩	481,998		
			₩	27,859,060		



: 2019-02-01

범죄일람표 2.(개인용도)					
순번	일자	인출된 계좌번호	금액(원)	내용	비고
1	2013-11-19		₩ 768,000		
2	2014-03-11	"	₩ 100,000	매형 조화	
3	2014-06-13	"	₩ 100,000	조카 결혼	
4	2014-06-23	"	₩ 100,000	친구 모친상	
5	2014-09-29	"	₩ 100,000		
6	2015-02-09	"	₩ 100,000	친구 시모	
7	2015-02-18	"	₩ 100,000	친구 장인	
8	2015-04-15	"	₩ 50,000	친구 개업식 화분	
9	2015-05-28	"	₩ 100,000	친구 시모	
10	2015-06-19	"	₩ 100,000	친구딸 결혼	
11	2015-09-19	"	₩ 95,450	재산세	
12	2015-09-17	"	₩ 95,450	재산세	
13	2016-01-08	"	₩ 100,000	친구 모친	
14	2016-01-29	"	₩ 200,000	조카 결혼	
15	2016-05-28	"	₩ 200,000	친구 부친	
16	2016-06-20	"	₩ 600,000	기성회 회비	
17	2016-07-14	"	₩ 100,050	재산세	
18	2016-07-14	"	₩ 100,050	재산세	
19	2016-07-22	"	₩ 100,000	지인 결혼	
20	2016-08-16	"	₩ 100,000	동창 부군	
21	2016-09-29	"	₩ 100,050	재산세	
22	2016-09-29	"	₩ 100,050	재산세	
23	2016-09-29	"	₩ 1,000,000	기성회 추가회비	
24	2016-10-14	"	₩ 100,000	지인 아들	
25	2016-11-14	"	₩ 100,000	친구 아들	
26	2016-12-13	"	₩ 100,000	지인 장모님	
27	2017-01-06	"	₩ 100,000	모임회원 장모님	
28	2017-01-13	"	₩ 50,000	친구 모친	
29	2017-04-18	"	₩ 50,000	친구 부친상	
30	2017-05-16	"	₩ 2,500,000	기성회비	
31	2017-07-19	"	₩ 50,000	친구 모친	
		합계	₩ 7,559,100		